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18. 12. 10 (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18 - 126)

2. 개정이유

- 본 개정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관련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도로법등) 개정 내용 반영 일부 조문 정비
 - 초과 도로점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 개정법규명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점용료 산정기준 근거조항 포괄적으로 규정, 삭제된 조정산식 반영, 연간 점용료 증가율 상한액 설정(안 제6조제1항)
 -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기준액 상향, 점용료 반환기준 구체화(안 제9조제1항)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
 - 대상시설물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추가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설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및 신설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 신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 제68조 및 72조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및 제71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도로점용허가)제2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추가하고, 제4호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설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화 하였고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개정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뿐만 아니라 초과 점용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및 신설하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납부자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 신설한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가하는 규제에 해당 하지 않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